

선 람	기관위원장



호외 2021년 2월 24일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익산시청  
발행처 : 홍보담당관

### 규 칙

- 익산시 규칙 제850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훈 령

- 익산시 훈령 제532호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9

### 고 시

- 익산시 고시 제2021-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항등리 주상복합) ..... 15

###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1-402호 익산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1
- 익산시 공고 제2021-403호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30
- 익산시 공고 제2021-414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39
- 익산시 공고 제2021-492호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6

회 람								
--------	--	--	--	--	--	--	--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익산시 규칙 제850호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b>합 계</b>		<b>1,591(24)</b>	<b>809(20)</b>	<b>25</b>	<b>125</b>	<b>46</b>	<b>169</b>	<b>10</b>	<b>17</b>	<b>15</b>	<b>180(1)</b>	<b>195(3)</b>	
정무직 계		1	1										
정무	소 계	1	1										
	지방정무	1	1										
일반직 계		1,536(24)	799(20)	25	125	5	165	10	17	15	180(1)	195(3)	
3급	소 계	1	1										
	행정	1	1										
4급	소 계	9	6	1	1		1						
	기술	1			1								
	행정·기술	8	6	1			1						
5급	소 계	83	37	3	3		9	1	1	1	14	14	
	행정	4	3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2					2						
	행정·시설	14	12					1	1				
	행정·별정	2		2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6											6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시설·별정	1		1									
	행정·방송통신·사서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2										2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3											3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4	1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3	1									2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보건진료·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6급	소 계	351	184	6	29		38	3	4	4	52	31
	행 정	27	19	5			3					
	세 무	6	6									
	전 산	1	1									
	사회복지	7	4									3
	사 서	1					1					
	공 업	6	3				3					
	농 업	2	2									
	보 건	3			3							
	보건진료	6			6							
	식품위생	1	1									
	환 경	2	1				1					
	시 설	27	22				3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3	3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세무	8	7				1					
	행정·전산	6	4				1				1	
	행정·사회복지	44	11								5	28
	행정·사서	5					5					
	행정·공업	21	11				9		1			
	행정·농업	25	11							1	13	
	행정·녹지	4	4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34	29				2	1	2			
	행정·별정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보건	1	1									
	공업·환경	7	6				1					
	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4								1	13		
행정·전산·사서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행정·사회복지·보건	7	1							1	5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3	3									
	행정·공업·농업	3	1								2	
	행정·공업·환경	5	4								1	
	행정·공업·시설	7	5				2					
	행정·공업·학예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농업·시설	8	5							1	2	
	행정·녹지·시설	3	2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간호	2	1		1							
	행정·시설·학예	2	1				1					
	녹지·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8			18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b>7급</b>	<b>소 계</b>	<b>419(2)</b>	<b>232(2)</b>	<b>6</b>	<b>28</b>	<b>1</b>	<b>45</b>	<b>4</b>	<b>10</b>	<b>5</b>	<b>37</b>	<b>51</b>
	행 정	146(2)	77(2)	6			11	1	8	1	10	32
	세 무	22	14							1	2	5
	전 산	3	3									
	사회복지	40	17							1	10	12
	사 서	4					4					
	공 업	18	12				6					
	농 업	4	3			1						
	녹 지	5	5									
	보 건	10	2		8							
	의료기술	2			2							
	간 호	6			6							
	보건진료	8			8							
	환 경	2	2									
	시 설	46	37				5	2	2			
	방송통신	4	4									
	시설관리	9	2				4				2	1
	운 전	4	3		1							
	전기운영	4	2				2					
	기계운영	8	4				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8	7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2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0	8							1	11	
	행정·녹지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0	7				3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5	1				4					
	농업·수익	6	6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b>8급</b>	<b>소 계</b>	<b>330(4)</b>	<b>173(4)</b>	<b>4</b>	<b>55</b>	<b>1</b>	<b>37</b>	<b>2</b>	<b>2</b>	<b>2</b>	<b>23</b>	<b>31</b>
	행 정	63(4)	46(4)	3			2			1	3	8
	세 무	21	13								3	5
	전 산	2	2									
	사회복지	25	9								5	11
	사 서	3					3					
	공 업	9	2			1	5		1			
	농 업	2	2									
	녹 지	2	2									
	보 건	6	4		2							
	의료기술	8			8							
	간 호	13			12		1					
	보건진료	10			10							
	환 경	4	4									
	시 설	37	30	1			4	2				
	방송통신	2	2									
	방재안전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4	4									
	전기운영	6	3				3					
	기계운영	11	2				9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9	6						1		2	
	행정·전산	7	6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24	9							1	8	6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9	7				2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보건	2					2					
	공업·환경	5	4				1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7			7							
	보건·간호	14	1		13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3	1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학예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b>9급</b>	<b>소 계</b>	<b>339(18)</b>	<b>165(14)</b>	<b>5</b>	<b>9</b>	<b>2</b>	<b>33</b>			<b>3</b>	<b>54(1)</b>	<b>68(3)</b>
	행 정	69(18)	44(14)				4				9(1)	12(3)
	세 무	8	3								2	3
	전 산	1	1									
	사 서	4					4					
	사회복지	85	21						3		26	35
	공 업	10	4			2	4					
	농 업	7									7	
	녹 지	2	2									
	보 건	8	5		2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1			1							
	환 경	9	7				2					
	시 설	36	33				3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1	3				4				2	2
	운 전	6	2	1	2		1					
	전기운영	6	3	1			2					
	사무운영	15	3	2	1						1	8
	행정·세무	5	3								1	1
	행정·전산	3	2				1					
	행정·사회복지	19	6								6	7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5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학예	3	1				2					
	공업·환경	3	2				1					
	농업·시설	3	3									
	보건·의료기술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	면	동
<b>전문경력관 계</b>		<b>4</b>	<b>1</b>			<b>1</b>	<b>2</b>					
나군	소 계	4	1			1	2					
	위생감시원	1	1									
	문화재관리전문요원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무대공연관리요원	1					1					
<b>연구직 계</b>		<b>9</b>	<b>3</b>			<b>2</b>	<b>4</b>					
연구사	소 계	9	3			2	4					
	환경연구	2					2					
	학예연구	4	2				2					
	기록연구	1	1									
	농업연구	1				1						
	농업·수의연구	1				1						
<b>지도직 계</b>		<b>40</b>	<b>1</b>			<b>39</b>						
지도관	소 계	3				3						
	농촌지도	3				3						
지도사	소 계	37	1			36						
	농촌지도	37	1			36						
<b>별정직 계</b>		<b>5</b>	<b>5</b>									
6급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8급	소 계	2	2									
	비서요원	2	2									
9급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2월 24일

## 익 산 시 장 정 헌 율

익산시 훈령 제532호

###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 (제2조제1항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계	국가(비례대표직군 제외)		지방(비례대표직군 제외)		지방(비례대표직군 포함)																																	
			합계	공직	비공직	공직	비공직																																	
합계		809	13	14	11	26	32	24	26	20	38	30	23	20	21	24	46	27	21	18	31	21	18	20	19	11	17	19	20	23	14	16	23	11	14	20	25	26	27	
정무직계		1								1																														
정무	소계	1								1																														
	지방정무	1								1																														
일반직계		799	13	14	11	26	32	24	26	20	31	30	23	20	19	24	46	27	21	18	31	21	18	19	19	11	17	19	20	23	14	16	23	11	14	20	25	26	27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1					1						1																								
	행정기술	6			1					1						1																								
5급	소계	3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	3			1	1	1																																	
	행정·사회복지	4														1	1	1	1																					
	행정·시설	12			1			1				1	1	1	1														1				1	1				1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시설	3											1																											1
	행정·농업·수위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복지·시설	3									1																													
	행정·보건·간호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방송·통신·사서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행정·농업·복지·시설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행정·복지·환경·시설	1																																							
6급 소계		184	3	4	3	6	7	6	5	6	7	6	6	5	5	5	6	6	4	6	6	5	4	4	5	3	4	4	6	6	4	4	5	3	4	4	6	6	5	
행정		19	2		1	4	1	1	1	4	2	1	1																											
사무		6			1	2	3																																	
전산		1						1																																
사회복지		4														2	1	1																						
공업		3									1																													
농업		2																																						
식품위생		1																																						
환경		1																																						
시설		22					1					1	1																											
시설관리		1																																						
운전		3						1		1																														
기계운영		1																																						
행정·사무		7				3	3	1																																
행정·전산		4				1	1			2																														
행정·사회복지		11															2	3	3	3																				
행정·공업		11										1	2				2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국가										지방					자치					특별														
		총무	기획	행정	교육	보건	농업	환경	건설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농림	해양	관광	도시	농업	해양	농림	해양															
전산	1			1																																
사회복지	21											8	4	6	2													1								
공업	4				1		2																													
농업																																				
농지	2																								1											
보건	5											2													1		2									
식품위생	1																										1									
환경	7																								1	1	4	1								
시설	33				1		1	1	1	1						4	1	2					1			1	2	4	1	1	1	4	3	3		
시설관리	3	1					1			1																										
운전	2																																		1	
전기운영	3									1																									1	
사무운영	3																																		2	
행정사무	3				2	1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1																																			
행정농업	5															1	1	2	1																	
행정농지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행정시설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학예	1																																			
공업환경	2																																			
농업시설	3																																			
<b>전문경력관 계</b>	<b>1</b>																																			
나군 소계	1																																			
위생감시원	1																																			
<b>연구직 계</b>	<b>3</b>																																			
연구사 소계	3																																			
학예연구	2																																			
기록연구	1																																			
<b>지도직 계</b>	<b>1</b>																																			
지도사 소계	1																																			
농촌지도	1																																			
<b>별정직 계</b>	<b>5</b>																																			
6급 소계	1																																			
비서요원	1																																			
7급 소계	1																																			
비서요원	1																																			
8급 소계	2																																			
비서요원	2																																			
9급 소계	1																																			
비서요원	1																																			

[별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직속기관) (제2조제3항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합계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합계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b>합계</b>			<b>125</b>	<b>90</b>	<b>24</b>	<b>11</b>	<b>46</b>	<b>31</b>	<b>15</b>
<b>일반직계</b>			<b>125</b>	<b>90</b>	<b>24</b>	<b>11</b>	<b>5</b>	<b>4</b>	<b>1</b>
4급	소계		1	1					
	기술		1	1					
5급	소계		3	1	1	1			
	행정·보건·보건진료·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2		1	1			
6급	소계		29	20	6	3			
	보건		3	3					
	보건진료		6	6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8	9	6	3			
	농업								
7급	소계		28	21	4	3	1		1
	농업						1		1
	보건		8	6	2				
	의료기술		2	1	1				
	간호		6	4	1	1			
	보건진료		8	8					
	운전		1	1					
	행정·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8급	소계		55	42	10	3	1	1	
	공업						1	1	
	보건		2	2					
	의료기술		8	4	3	1			
	간호		12	10	1	1			
	보건진료		10	10					
	보건·의료기술		7	7					
	보건·간호		13	6	6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9급	소계		9	5	3	1	2	2	
	공업						2	2	
	보건		2	2					
	의료기술		1	1					
	운전		2	1	1				
	사무운영		1		1				
	행정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		1	1						
<b>전문경력관계</b>						<b>1</b>	<b>1</b>		
나군	소계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b>연구직계</b>						<b>2</b>		<b>2</b>	
연구사	소계					2		2	
	농업연구					1		1	
	농업·수의 연구					1		1	
<b>지도직계</b>						<b>39</b>	<b>27</b>	<b>12</b>	
지도관	소계					3	2	1	
	농촌지도					3	2	1	
지도사	소계					36	25	11	
	농촌지도					36	25	11	

익산시 고시 제2021-19호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2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황등리 주상복합)

1. 사업명 : 익산 황등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3. 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1001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3,610㎡
  - 나. 건축면적 : 1,236.1968㎡
  - 다. 연면적 : 20,860.573㎡
  - 라. 규모 : 지하2층/지상22층, 120세대
  -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바.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분양
  - 사. 사업비 : 38,409백만원
  - 아. 사업기간 : 2021. 04. ~ 2023. 10.
5.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익산시 주택과 비치)
6. 의제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의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익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황등리 주상복합	황등면 황등리 1001번지 일원	-	증) 3,932	3,932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	황등면 황등리 1001번지 일원	3,932	황등리 주상복합 건립 시 양호한 환경 확보와 기능 증진 등 계획적인 개발 도모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778	대로 1-1 216-18전	중로 2-2 741전	일반 도로	-	익산시 고시 (2000.8.21)	
변경	중로	3	1	12 ~14.5	집산 도로	1,778	대로 1-1 216-18전	중로 2-2 741전	일반 도로	-	익산시 고시 (2000.8.21)	일부구간 확폭 (L=90m B=증 2.5m)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1	중로3-1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L=90m, B=12m → 14.5m(증 2.5m)	· 황등리 주상복합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 한 완화차로 확보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	1	3,932	①	황등리 1001번지 일원	2,756	공동주택용지(일반상업지역)
			②	황등리 1001번지 일원	854	공동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③	황등리 1000-7번지 일원	175	도로용지(중로 3-1호선)
			④	황등리 1000-3번지 일원	147	도로용지(기타도로)

※ 공동주택용지는 용도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2개의 획지(필지)로 분할하되,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1-①	일반 상업지역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주택법 제2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li> </ul>	
			건폐율	◦ 50% 이하	법정 : 8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법정 : 800% 이하
			높이	◦ 22층 이하(최고높이 80m 이하)	법정 : 제한없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로3-1호선변 3.8m 건축한계선 지정</li> <li>- 건축한계선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공공보행통로는 [별표1]의 조성기준에 따름</li> </ul>	
	1-②	제1종일반 주거지역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 제2조 부대시설</li> <li>- 주택법 제2조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li> </ul> </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ul>	
			건폐율	◦ 50% 이하	법정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법정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최고높이 20m 이하)	법정 : 4층 이하	

[별표1]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으로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담장,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 식재 및 벤치는 가능함
- 바닥 인접보도의 높이 및 포장재와 같도록 조성하되, 인접보도의 포장재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이 조화로운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 익산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1호선)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1001번지 일원

###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1호)사업
- 명 칭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주상복합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③ 사업규모

1. 도시계획시설사업 면적 : 175㎡(도시계획도로 완화차로개설)
2. 교통시설 (도로)

구분	결 정 조 서								개 설(조성) 계 획					비고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폭원	연장	면적	위 치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점	중 점					기 점		중점
변경	중로	3	1	12.0	집산 도로	1,778	대로1-1 216-18전	중로2-2 741전	일반 도로	2.5	90	175	황등리 1004-12도	황등리 909-5도	완화 차로

### ④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대표자 최 산 성
2.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 ⑤ 사업시행기간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24년 6월 30일

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서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4,535	175					
1	909-4	도	152	7	국(건설부)				
2	909-5	도	13	1	국(건설부)				
3	909-6	대	83	18	옥승호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376 익산시 익산대로 124			
4	909-36	도	63	8	국(건설부)				
5	909-57	도	3	3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수탁자
6	1000-3	대	248	9	옥승호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376			
7	1000-5	대	53	10	최선옥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13-1			
8	1000-7	도	179	7	국(건설부)				
9	1000-10	도	3	3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수탁자
10	1000-11	도	3	3	국(기획재정부)				
11	1000-12	도	20	20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수탁자
12	1001	전	3,507	67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수탁자
13	1004-1	전	76	5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수탁자
14	1004-8	도	106	4	국(건설부)				
15	1004-12	도	26	10	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수탁자

○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지장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서

구분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구조	건축물수	비고
1	황등리 909-6 황등리 1000-3	83m <sup>2</sup> 248m <sup>2</sup>	21.48m <sup>2</sup> 216.47m <sup>2</sup>	21.48m <sup>2</sup> 216.47m <sup>2</sup>	71.89%	71.89%	시멘트블록조	5동	착공전철거
2	황등리 1000-5	53m <sup>2</sup>	36.66m <sup>2</sup>	73.32m <sup>2</sup>	69.16%	138.33%	일반철골구조	1동	착공전철거

㉗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도로 사업완료 후 해당시설(토지 및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㉘ 관계도서(도면) : "계재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1-402호

익산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익 산 시 장

## 익산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익산시 주요정책·사업 추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조례의 적용, 운영대상,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시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859-5813, 팩스 859-505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859-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 익산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민간전문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제6조(민간전문가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분야별로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민간전문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전문가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9조(시장의 역할)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 제공)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

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참 고 자 료

□ 타 지자체 조례 입안현황

연번	자치법규명	제정일	비고
1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2019. 9. 30.	
2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2016. 6. 15.	
3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5. 18.	
4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6.	
5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6.	
6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7.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18. 12. 31.	
8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19. 4. 11.	
9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19. 7. 11.	
10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20. 7. 17.	
11	화성시 농업·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28.	
12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20. 10. 30.	

□ 전주시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연번	민간전문가	성명	위촉기간	해당업무	비고
1	경제총괄가 경기획가	박인숙	20.4. ~ 22.2.	○ 전주시 경제정책 조정 및 자문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경제총괄가 자문	채준호	20.4. ~ 22.2.		
2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총괄자문관	김미곤	20.3. ~ 21.3.	○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문	생활복지과
3	통합돌봄 총괄자문관	변재관	20.2. ~ 21.12.	○ 통합돌봄 선도사업 자문	통합돌봄과
4	총조경 평가	최신현	19.1. ~ 22.1.	○ 전주시 녹지정책(조경) 자문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5	총건축 평가	최신현	19.1. ~ 22.1.	○ 공공건축 및 도시·디자인사업 등 자문	건축과
6	지역재생 총괄계획가	조준배	19.7. ~ 21.6.	○ 전주시 지역재생 기획 총괄 자문	주거복지과
7	보건의료 자문관	황정환	20.3.3.~ 코로나19 종료시	○ 코로나19 대응반 총괄지원 및 장기화 대비 전략 방안 등 감염병 관련 정책자문	보건행정과 시민안전 담당관
		이주형			
		권근상			
8	농정 총괄자문관	김중기	20.3. ~ 22.3.	○ 전주시 먹거리 및 농업·축산정책 총괄 자문	먹거리 정책과
9	동물복지 총괄자문관	임채웅	20.6. ~ 22.6.	○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 총괄 자문	동물복지과
10	금융 총괄자문관	유광열	20.9. ~ 22.8.	○ 전주시 금융산업 정책 총괄 자문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정희준			
		영주닐슨			

익산시 공고 제2021-403호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익 산 시 장

##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 다.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 1)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사무소 신축비, 토지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
  - 2)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 주택자금 대출이자
  - 3)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 마. 여론조사 및 조사연구, 포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859-5813, 팩스 859-505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859-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3.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사무소 신축비, 토지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

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참 고 자 료

타 지자체 조례 입안현황

연번	자치법규명	제정일	비고
1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013.6.5.	
2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19	
3	홍성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5.	
4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5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7.3.	
6	공주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안중	

[붙임 2]

관 계 법 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익산시 공고 제2021-414호

「익산시 아이돌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일

## 익 산 시 장

###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서비스 제공기관(안 제5조)
- 라. 지원 신청(안 제6조)
- 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 ~ 안 제8조)

#### 3. 의견제출

-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 (참조 : 여

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전화 063-859-5925, Fax 063-859-507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다문화지원계 담당자 (☎859-59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	비 고
첫째아	50%	
둘째아	50%	
셋째아 이상	70%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 정부지원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공고 제2021-492호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익 산 시 장

##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신설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구성,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에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단장 등의 직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단장 및 임원의 직무, 임기,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

- 다. 임무, 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방재단의 주요임무, 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규정
- 라.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방재단의 소집 등, 교육 및 훈련, 자문 규정
- 마. 방재단의 활동지원, 출입증 (안 제13조, 제14조)
  - 활동지원, 출입증 규정
- 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유족의 우선순위 등, 유족 급여지급방법, 재해보상금의 환수(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재해보상(요양, 장해, 장애 및 유족보상) 규정
- 사. 위촉장, 가입신청서(개인·단체), 활동확인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출입증, 요양, 장해, 장애, 유족 보상청구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안 별지 제1호 ~ 별지7호 서식, 별표)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시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전화 063-859-5404, Fax 063-859-5962)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시민안전과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담당자(☎063-859-54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

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위 축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00시 지역자율방재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00시 장

[별지 제2호서식]

##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OO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활동확인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을 말합니다.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 활동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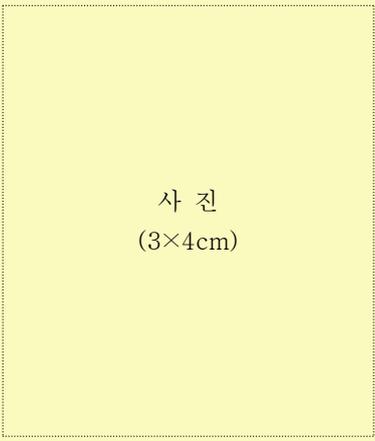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b>출 입 증</b>	<b>지역자율방재단원증</b>
 <p>사 진 (3×4cm)</p>	<p>NO. 000      혈액형 O(RH+)형</p> <p>성 명 : ○ ○ ○</p> <p>생년월일 : . . . ( )</p> <p>소 속 :</p> <p>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휘장) 삽입</p>
← 5.5cm →	↑ 7.7 c m ↓
<b>시 지역자율방재단</b>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 , 장애 [ ] , 장제 [ ] , 유족 [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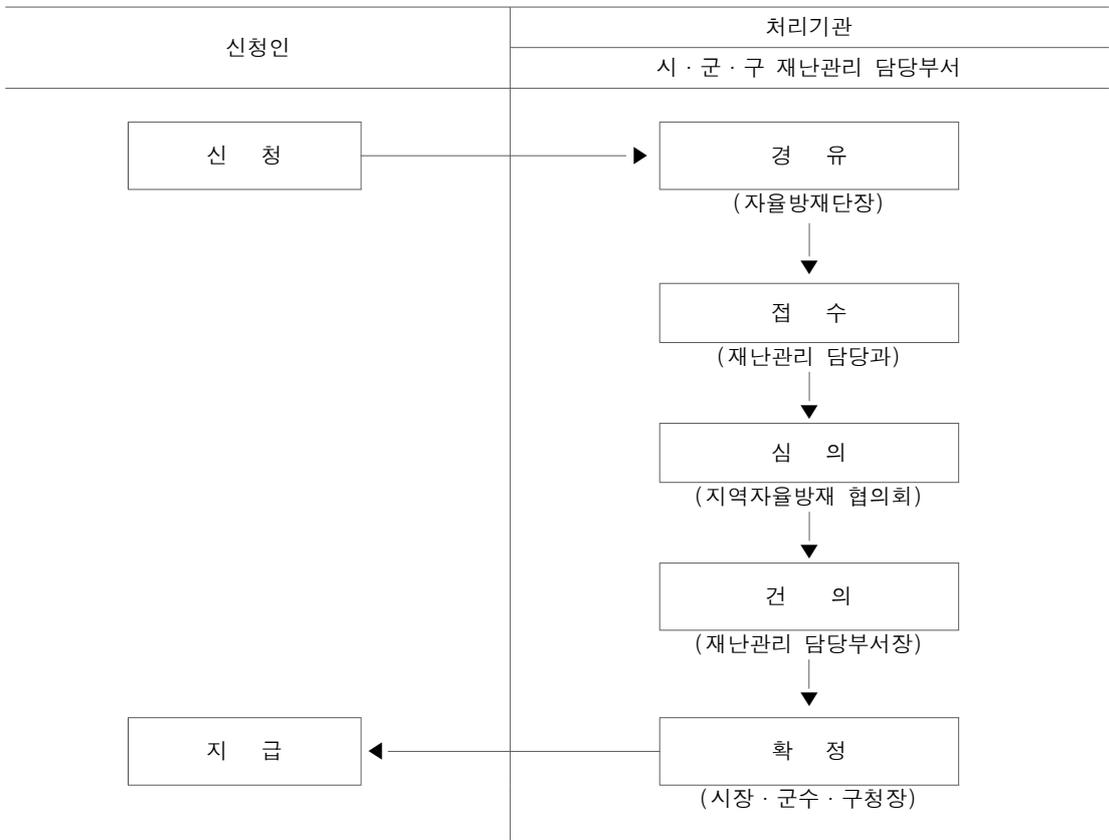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 여는 「의사상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 표 1을 준용한 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